#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
○ 공장 생산제품 적치장으로 장기간 대부중인 군유림에 대하여 산림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사실상 임야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며 공장유치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부 중에 있는 군유림을 매각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군유림 매각

- **매각목적** : 대부중인 군유림을 매각하여 중소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- **대상토지** : 3필지 9,572㎡ 【임야 9,572㎡】
- **공시가격** : 40,593천원정도(공시가격 : 4,241원/㎡)

※ 매각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매각함.

- **대상토지 조서**

| 연번 | 토 지 현 황 | | 지 목 | | 공 부 면 적 (㎡) | 매 각 면 적 (㎡) | 공시지가 (㎡/원) | 소유자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소 재 지 | 지 번 | 공부 | 사실 | | | | |
| 계 | 3필지 | | | | 477,742 | 9,572 | | |
| 1 | 선남면 관화리 | 산33-1 | 임 | 공장용지 | 474,262 | 6,092 | 3,960 | 성주군 |
| 2 | 〃 | 산33-9 | 임 | 〃 | 1,298 | 1,298 | 4,750 | 성주군 |
| 3 | 〃 | 산33-11 | 임 | 〃 | 2,182 | 2,182 | 4,750 | 성주군 |

4. 관련법령

○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6조제1항

○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

○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

붙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1부.

#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

## □ 2009년도 관리계획 총괄표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㎡, 천원)

| 구분 | | | 상반기(당초) | | | 하반기(변경) | | | 합계 | |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건수 | 수량 | 금액 | 건수 | 수량 | 금액 | 건수 | 수량 | 금액 | |
| 취득 | 계 | 토지<br>건물<br>기타 | 36<br>26 | 29,781<br>2218.8 | 665,997<br>276,096 | 6<br>8 | 10,220<br>2,726 | 3,192,972<br>600,000 | 42<br>34 | 40,001<br>4,944.8 | 3,858,969<br>876,096 | |
| | 1.매입 | 토지<br>건물<br>기타 | 36<br>26 | 29,781<br>2218.8 | 665,997<br>276,096 | 6<br>8 | 10,220<br>2,726 | 3,192,972<br>600,000 | 42<br>34 | 40,001<br>4,944.8 | 3,858,969<br>876,096 | 기의결 |
| | 2.교환으로 취득 | 토지<br>건물<br>기타 | | | | | | | | | | |
| | 3.기타 취득 | 토지<br>건물<br>기타 | | | | | | | | | | |
| 처분 | 계 | 토지<br>건물<br>기타 | | | | 3 | 9,572 | 40,593 | 3 | 9,572 | 40,593 | |
| | 4.매각 | 토지<br>건물<br>기타 | | | | 3 | 9,572 | 40,593 | 3 | 9,572 | 40,593 | 금회 |
| | 5.양여 | 토지<br>건물<br>기타 | | | | | | | | | | |
| | 6.교환으로 처분 | 토지<br>건물<br>기타 | | | | | | | | | | |
| | 7.기타 처분 | 토지<br>건물<br>기타 | | | | | | | | | | |
| 사용 및 대부허가 | | 계<br>토지<br>건물<br>기타 | | | | | | | | | | |

## □ 2009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㎡, 천원)

| 일련번호 | 재산표시 | | | 매각대상수량 | 과표또는평가액(추정) | 매각시기 | 매각사유 | 매수희망자성명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구분 | 소재지 | 일단의수량 | | | | | | |
| 1. | 토지 | 선남 관화 산33-1 | 474,262 | 6,092 | 24,129 | 하반기 | 대부지매각 | (주)에코청진 | |
| 2. | 〃 | 선남 관화 산33-9 | 1,298 | 1,298 | 6,165 | 〃 | 〃 | 〃 | |
| 3. | 〃 | 선남 관화 산33-11 | 2,182 | 2,182 | 10,299 | 〃 | 〃 | 〃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계 | 토지 | 3필 | 477,742 | 9,572 | 40,593 | | | | |
| | 건물 | | | | | | | | |
| | 기타 | | | | | | | | |

5. 검토의견

□ **제출자, 제안사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음.**

□ **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**

○ **제1항에는**

- "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한다.
  **다만,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"라고 규정되어 있으며,**

○ **제2항에는**

- "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**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**하여야 한다"라고 규정되어 있음.**(공유림관리계획이 중요함)**

□ **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담당부서에서는**

○ 대부중인 군유림을 매각하고자 「**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**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임.

□ **금번에 제출된 「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」의 내용은**

○ 장기간 대부중인 군유림에 공장 생산제품 적치장 등 공장용지로 사용해 오고 있어 **공부상으로는 지목이 임야**지만 **사실상은 공장용지**로

○ 산림으로서는 기능이 상실되어 사실상 임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담당부서에서는 판단하여 매수 희망업체에 군유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됨.

□ **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**이기 때문에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3조(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**공무원의 주의의무**)에도

○ "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**공무원은**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**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**하여야 한다"라고 규정 되어 있음.

□ 따라서 공유재산의 **취득・처분・대부업무**는 **상급기관의 집중 감사대상이고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징계를 많이 받기 때문에** 공유재산관련 법을 연찬하여 **업무처리에 있어 신중**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됨.

□ 기업인 스스로가 **「기업하기 좋은 성주」**라는 소문을 낼 정도로 우리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**“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”**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군이 더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됨.

□ **특히,** 선남면 관화리 산33-1번지는 군유림의 면적도 넓고 대구 및 중부내륙고속도로와도 가까운 위치에 있어 교통접근성도 좋으며, 아울러 정부역점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된 낙동강도 인근에 있는 등 개발여건이 좋아

□ 앞으로 이곳에 **특색 있는 대형프로젝트를 구상**하여 우리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, 향후 공유재산 매각업무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**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